



한우 부루세라 현황과 대책

농림부 가축방역과

부루세라병 개요

부루세라는 제2종 법정 가축전염병이며 인수(人獸) 공통전염병으로 부루세라균에 오염된 사료, 물, 양수, 우유와 교미, 감염정액을 사용한 인공수정 등으로 감염되며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3주~2개월에서 길게는 6~10개월이다.

특이 임상증상이 없고, 유산이 있고난 후 감염을 인지하며, 가축에서는 유산·불임·고환염이 발생하고 사람에게는 감기·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남.

가축에서의 치료는 세포내 기생 세균, 경제성을 감안으로 치료 곤란하다.

발생동향

□ 한우는 '00년부터 산발적으로 발생하다가 지난해부터 발생이 크게 증가, 젖소는 '00년 이후 감소 추세

○연도별 발생상황

년 도		'00	'01	'02	'03	'04	'05.4
전체	건수	271건	131	110	172	711	895
	두수	1,249두	754	845	1,088	5,383	6,228
한우(건/두수)		5/51	4/70	5/183	62/590	595/4,101	856/5,646
젖소(건/두수)		266/1,198	127/684	105/662	110/498	116/1,282	39/582

- 한우에서 발생 증가사유
 - 지난해부터 다발지역 일제검사, 금년 3월부터 도축용 암소에 대한 검사증명서 휴대제 시행 등을 통해 감염소 색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임
 - ※농장 발생원인 : 외부구입 77%, 인근전파 5%, 원인미상 18%
- 금년말까지 총 1,900농가 18천두가 검색, 살처분은 최대 21천두가 될 것으로 예측
- 사람은 '02년부터 '04.4까지 총 106명이 감염
 - 연도별 : '02년 1명, '03년 16명, '04년 47명, '05.4 : 42명
 - 목부, 진료수의사 등 감염소와 직접 접촉한 사람에서만 발생

살처분 동향

- 감염소 색출에 따라 살처분 실적과 보상금 소요도 크게 증가
 - ('04년) 7,336두 → ('05.3) 7,130 → ('05.P) 21,000
 - 보상금은 3월까지 284억원('04년 : 239억원), 연말까지 770~1,000억원까지 소요 추정
 - ※금년 보상금(100억원)이 1/4분기중에 소진, 상반기 소요 예산(357억원) 추가 전용

연행 부루세라병 방역정책

- 기본정책은 예방접종없이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소를 색출·살처분, 농장 감염율이 5%이상일 때 예방접종
- 부루세라병 검사체계
 - 한육우 : 발생농장, 다발지역 및 거래암소 중심, 개체별 검사
 - 젖 소 : 집유장에서 농장단위 원유 검사후 양성 농장에 대해 개체별 검사
-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조치
 - 이동제한, 감염축 살처분 및 동거축 도태
 - 30~60일간격 2회검사후 이동제한 해제
 - 단, 이동제한기간중이라도 도축장 출하는 허용
 - 발생농가·진료수의사 등은 지역 보건부서에 통보, 인체 감염여부 조사·치료



외국의 방역 사례

□ 예방접종 추진 관련

- 비발생 또는 감염율이 낮은 국가는 검사·살처분 정책-호주, 뉴질랜드, 캐나다, 유럽, 일본 등
- 감염율이 높은 국가는 예방접종 실시
 - 아르헨티나·칠레·브라질 등 중남미 지역, 이란·이스라엘·시리아 등 중동지역, 멕시코, 러시아 등
- 미국은 감염율이 높은 일부 주(州)에 한해 예방접종
 - ※소를 방목·사육하는 외국은 개체관리가 어렵고, 야생 물소 등과의 접촉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

□ 감염소의 식용 허용 관련

- CODEX(국제식품규격위원회), OIE(국제수역사무국)는 감염 소의 감염부위(임파절, 생식기) 제거후 식용
 - 미국, 덴마크, 브라질, 영국, 이탈리아, 러시아 등
- ※부루세라균은 소의 근육에 거의 존재하지 않고, 고기에 미량으로 존재해도 도축후 고기의 사후강직·숙성중 짧은 시간내 사멸
- ※고기를 통해 사람 환자가 발생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보고된 바 없음

방역 보완대책 및 향후계획

1) 예방접종 도입을 대비한 사전 대책 수립·추진

- 예방접종은 검사 및 감염율 동향을 분석후 재논의
 - 현재 감염율(2.83%), 3월부터 본격적 검사가 시행된 점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경과후 예방접종 재논의
 - ※한우 농가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하고 있는 검사 확대·살처분 정책을 시행 초기에 번복할 경우, 농가의 농정불신·방역관리 소홀 등 부작용 예상
 - '05상반기까지 감염율이 계속 증가되어 한우 사육기반 및 소비 위축 등으로 진전될 경우 예방접종 검토

○부루세라 예방약(부루세라 어보투스 LPS 변이균주)의 수입품목 허가조치 검토(검역원)

2) 살처분 가축의 처리방법 개선

□ 기존 육골분·유지 등 제조업체에 "살처분 가축 전용 렌더링시설" 보강비용 지원('06년 상반기 완료)

□ 렌더링 처리시설의 운영비(두당 100천원)와 운반차량 등 부대 장비 구입은 지방비에서 부담

○살처분 가축의 운송, 처리 및 사후 관리지침을 마련(농림부)

○시·도는 동 지침에 따라 전용 운반차량 확보 및 관리지침 준수

3) 감염 소의 식용화 검토를 위해 지육 등 부위별 병원체 존재여부 검사 추진

○살처분 가축의 지육·감염부위별(임파절, 생식기 등)로 부루세라균 존재여부를 검사, 관련 자료를 축적하여 식용화 추진 준비

- 5월중 수의과학검역원에서 검사계획을 마련, 시·도 가축위생시험소와 협조하여 시료 채취 및 검사

○검사결과, 안전성이 확보된 근거자료가 나오면 소비자, 한우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 및 감염 소의 고기 식용문제를 공론화 추진

※이 문제는 소비자 정서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

4) 수소에 대한 검사 강화

□ 도축용 수소(연간 320천두)에 대한 검사 의무화는 필요성이 낮고, 현행 검사물량이 한계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시행이 어려움

○현 단계에서는 감염 및 전파 위험성이 높은 암소를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효과적임

- 도축용 소의 검사는 한우고기의 안전성 확보보다는 감염 소를 색출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음

○현재 검사 업무량이 과다한 상태에서 도축용 수소까지 검사를 확대할 경우 검사 혼선과 검사 지연으로 인한 농가 불만 야기

□ 농장 단위에서 수소 검사를 확대하도록 방역관리 강화

○농장 사육 자연교배용 수소의 검사를 의무화(6월부터)



- 시·도지사가 검사명령 고시, 위반 농가는 과태료(500만원이하) 처분 및 살처분보상금 차등 지급(평가액의 60%)

5) 원활한 검사업무 수행을 위한 채혈·보정요원 지원

○검사증명서 휴대제와 관련된 채혈은 방역본부 방역요원이 전담

- 채혈기간 단축을 위해 방역요원 30명 추가 배치 및 방역본부 출장소별 관내 사육규모를 감안하여 방역요원 재배치(6월중)

6) 소 수집상·중개상(1,394명)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

○소 수집상·중개상이 사육하고 있는 소(51천두)에 대해 분기별 1회이상 정기검사 추진

7) 생산자단체의 방역 역할 강화

○농협중앙회, 한우협회에서 검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채혈인력 차출 지원

- 지역축협 지도요원 및 한우협회 시·군지부 요원 활용, 시·군별 1명이상의 채혈요원 지원

축산농가 예방수칙



- 외부에서 소는 반드시 검사받은 소만을 구입
 - 농장내에서 합사전에 일정기간 격리후 재검사
- 유·사산 발생시 관할 시군 또는 가축방역기관 신고
 - 유·사산 태아 등 취급시 개인 위생관리 철저
 - 개, 고양이 등의 유·사산 태아 등 접촉 예방
 - 유·사산 태아가 발생한 축사는 반드시 소독 및 동거소의 격리
- 자연종부 금지 및 자연종부에 이용되는 소는 정기검사
- 정기적인 농장 소독(주 2회) 및 인공 수정장비 소독 등